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
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동반자 모집공고 등과 같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매년 급증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113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11. 12. 시행)됨에 따라, 그 필요한 조치로 자살유발정보의 차단·삭제, 검색 제한 및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을 규정하고, 조치 결과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8. 26. ~ 10. 6., 10. 15. ~ 10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강화 1건(자살 예방)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자살유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등) ① 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로 한다.

1. 자살유발정보의 차단·삭제
2.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
3.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의 송수신 제한

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 결과를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자살유발정보의 유통 방</u> <u>지를 위한 조치 등) ① 법 제19</u> <u>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</u> <u>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</u> <u>조치로 한다.</u> <u>1. 자살유발정보의 차단·삭제</u> <u>2.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</u> <u>제한</u> <u>3.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의</u> <u>송수신 제한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정</u> <u>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</u> <u>결과를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</u> <u>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</u> <u>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</u> <u>따라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</u> <u>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899